

용역 및 물품 구매설치 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용역 및 물품 구매설치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과 물품의 공급, 구매 및 설치에 대한 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총칭하여 "본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갑"이라 함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및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의하여 "을"과의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 ② "을"이라 함은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을"은 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또는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보증금은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에게 귀속된다.
-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기술)규격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CDR결과물, 견적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 ② 계약문서 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1순위 계약서
 - 2) 2순위 본 계약 관련 특수조건
 - 3) 3순위 계약 일반조건
 - 4) 4순위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CDR 결과물
 - 5) 5순위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용역의 착수)

- ①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갑"에게 착수에 따른 예정 공정표 및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의 중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용역 착수 후 "갑"으로부터 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 내역서, 일위대가표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 용역이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납품 및 설치)

-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설치 완료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갑”이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 및 설치를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 및 설치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 및 설치를 할 수 없다.
- ④ “갑”의 사정상 납품이 연기될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물품 보관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는 한 “을”이 보관하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을”의 보관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8조 (규격)

-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본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갑”이 제시한 견본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 본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9조 (일반보증)

- ①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갑”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당해 물품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대체 물품대금과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을”은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당해 물품대금을 “갑”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반납이 지연될 경우에 “을”은 “갑”에게 물품대금 반납지연에 따른 이자를 “갑”의 주거래은행 정기예금 이자율과 같은 수준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행 및 감독)

- ① “을”은 계약서 및 시방서, 작업지시서,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용역의 수행과정, 물품의 설치과정 등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규격 및 수량 변경)

- ① 본 계약체결 후 “갑”의 사정상 계약된 물품의 규격 및 수량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변경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② “갑”은 설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 제2항의 변경, 중지로 인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용역의 변경 또는 중지)

- ① 본 계약체결 후 “갑”의 사정 상 계약 내용의 변경, 중지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 제1항의 변경, 중지로 인하여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검수 또는 검사)

- ①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 또는 검사를 한다.
- ③ 계약의 성질상 계약 수행 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약수행 과정에서 검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검수 기준이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승인 및 정상작동 확인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수행의 결과나 설치된 물품의 사용이 관련 대외 기관의 승인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의 결과를 검수완료로 한다.
- ⑤ “갑”은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⑥ “을”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 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 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인수)

“갑”은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물을 인수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갑”은 용역 수행 중 그 결과물의 일부에 대하여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자료의 제출)

“을”은 물품 납품 시 해당물품의 상세 매뉴얼 등의 관련자료 및 사용,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 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을”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 (가격보증)

“을”은 본 계약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구매 상황의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높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완료 후라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갑”은 그 차액에 대하여 대가의 감액, 환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물품대금 지급전인 경우엔 “을”의 반대서류 제출시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하도급)

- ① “을”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대가는 “갑”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종업원 및 고용원)

-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 용역에 투입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갑”은 필요한 경우 특정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에 투입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의 종업원 및 고용원 중 부적당한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하자보증금)

“을”은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서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증금을 “갑”에게 현금,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또는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유지보수 의무)

- ① 하자보증기간 내의 유지보수는 “갑”의 통보에 따라 “을”의 전문요원이 시행하며, “을”은 통보를 받은 즉시 조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②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유지보수계약 체결에 의하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수명기간 동안 재설계 등 무상보수를 실시하고 불량요인을 제거할 책임을 갖는다.
- ③ “을”이 제1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조치한 후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계약 시에 “을” 및 원천 공급사의 유지보수 계약이행 및 기술지원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갑”의 승인 하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을”은 무상 하자보증(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또는 “갑”이 정하는 시기에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별도 지정 시에는 “갑”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설치된 계약 물품이 최적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기술전수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고, 부품구매 등 실 발생비용 등은 상호 협의한다.
- ⑥ “을”은 사업 양수도시 양수인이 제3항 규정을 계속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가의 지급)

- ① “을”은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조건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갑”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지체상금)

-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매 지체 일수마다 3/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납부하지 않으면 "갑"은 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 ② "을"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계약이행 연기원을 "갑"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검토하여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시킨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 ① 다음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갑"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 행위가 있었을 경우
 -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납품 및 설치 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을"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4)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갑"의 서면 통보를 받고도 15일 이상 경과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5) "을"이 해산(청산), 파산, 회생절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상태에 빠지거나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을"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한 경우
 - 6) "을"에게 지급의 정지(부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7) 기타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 이외에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갑"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용역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의 용역수행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이 "을"에게 기 지급한 선금금(착수금)이 있을 때 "을"은 "갑"에게 즉시 선금금(착수금) 및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합하여 반환해야 하며, "갑"이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을"의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기 성과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26조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① "을"은 본 물품의 납품 및 설치 후 "갑"의 운용 요원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작요령 및 유지보수기법 등을 교육을 시켜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 및 내용은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을"은 설치된 구매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자문에 응하고 또한 "갑"이 필요로 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기술 지원 사항에 대하여 최상의 협조를 한다.

제27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갑"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종업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① 계약 목적물의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같다.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 (손해배상)

- ① 본 계약 제24조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갑"의 목적사업에 직,간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납품한 용역·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 ④ 용역·물품에 결함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갑"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제30조 (불성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이 "갑"의 불성실업체 관리지침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갑"의 불성실업체 관련 지침에 의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이행완료 확인)

- ① "갑"은 제3조 및 제21조에 의거 각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받은 후 계약 또는 하자 사고에 대한 청구기간(계약종료 후 2년)이 완료되기 전에는 (계약)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및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계약 및 하자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구기간 중에 계약 불이행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갑"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및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다.

제32조 (변경신고)

"을"은 주소지, 상호, 대표자 등 계약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33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계약관행 및 해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법원은 "갑"의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